

현 장 설 명 서 및 특 기 시 방 서

[강원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

- 건축 -

강원대학교병원

I. 일반사항

- 1) 공 사 명 : 강원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
- 2)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 및 주차장
- 3) 공사개요
 1. 가설공사 : 건축물 현장정리
 2. 금속공사 : 폴리카보네이트 구조체(각파이프) 설치
 3. 지붕 및 흠통공사 : 선흠통 설치, GUTTER 설치, PVC 슬리브 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설치
 4. 철거공사 : 기존 슬리브 철거 및 모르타르 철거
- 4) 공사기간 : 착공 후 40일
- 5) 공사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II. 특기사항

- 1) 본 공사는 강원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를 파악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
- 2)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하며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진다.
- 4) 공종별 공사착수(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진행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자재승인서 제출 및 승인)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5)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 오기 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확인 후 계약자가 시행한다.
- 6) 본 공사 발주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
- 7) 계약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8) 계약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 9) 본 공사 시공중 필요시 모든 대 관청 각종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

계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10)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자가 부담한다.
- 11) 본 공사에 있어 계약자는 현장에 가설시설을 설치 및 장비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건물 및 인명사건 발생시 계약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12) 본 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와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
- 13)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할 경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4) 본 공사중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15)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 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16)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 17)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
 - 주요공정검사 : 마감공정상태 등
 - 준 공 검 사 :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 18)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19) 본 공사시 계약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현장 내 먼지 배출 장치 설치)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과 기타 사항으로 민원발생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
- 20)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주처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 22) 현장설명서만 배포하고, 열람용 도면은 현장설명 장소에 비치한다.
- 23) 각 공사 진행 시 주의 사항
 - 가) 현장 여건 및 공정 진행 상황에 의하여 주말작업 및 야간작업 시행 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주의한다.
 - 나) 당 현장의 특수성(학교)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
 - 다)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에 주의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 진다.
 - 라) 공사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바닥 보양 및 기존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을 철저히 해야하며, 기존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원가계산 시 법적 요율 준수항목(발주년도 제비율표 적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산처리 함

24) 공사중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외 자재 포장재,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공사 내용 문의 ☎ 033) 258-9331~2 >